

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8. 6. 4.(수), 15:00

2. 장 소 :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송도균 부위원장
이경자 위 원
이병기 위 원
형태근 위 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계획(안)에 관한 건 (2008-13-034)

-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의 보고를 받고, 사업자 허가 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위치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, 부가서비스로서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,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, 제3조에 의한 「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계획(안)」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.
-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허가신청을 받아(접수기간 : 6.23~6.27) 허가심사를 추진함.
- 허가신청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심사 후 허가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법 제5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-5호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항목별 심사를 진행함.
- 재무구조의 건전성 평가와 영업 및 기술부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함.
- 심사사항 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, 총점 70점 이상 득한 경우 적격판정하고, 허가심사결과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·통보함.
- 사업자 허가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성·신뢰성 제고,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·개발 등에 필요한 경우 허가조건을 부여함.

2)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(2008-13-035)

-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, 가야유선방송사(대표 하장옥), 마천유선방송사(대표 강중화), 화개유선방송사(대표 박순희)에 대해 방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재허가하기로 의결함.

3)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- (주)온미디어 등 4개사 (2008-13-036~039)

-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의한 대표자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은 (주)온미디어, (주)카티비, (주)케이엠네트워크, 부동산경제티브이(주)에 대해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.

4) 2008년 방송평가 실시 기본계획에 관한 (2008-13-022)

- 정진우 방송운영관의 보고를 받고, 방송평가 결과가 공개되어도 무방할 정도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바, 평가항목 등에 대한 재검토 후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.

사. 기 타

1)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(화)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(16:20)